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2. 10 선고 2021나123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2. 10 선고 2021나1231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19가합6487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기술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N

원고보조참가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호진

변론 종결2022. 1. 20.

판결 선고2022. 2. 10.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19가합64876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 및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39,564,63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9,56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소송절차를 수계한 후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보조참가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의뢰인인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각 대출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이하 아래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2011. 8. 26.	D	280,500,000원	2012. 8. 24.
2	2011. 8. 26.	E	714,000,000원	2012. 8. 24.
3	2014. 8. 12.	F	450,000,000원	2015. 8. 12.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수차례 변경되어 이 사건 제1, 2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9. 8. 16.로,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9. 8. 9.로 각 최종 연장되었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10조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C와 B은 연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보조참가인이 정하는 비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②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 비용(대지급금 등), ③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은행의 대출 실행

C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1,67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1	2011. 8. 30.	기타중소운전자금대출	330,000,000원	2019. 8. 16.
2	2011. 8. 30.	무역어음한도대출	840,000,000원	2019. 8. 16.
3	2014. 8. 13.	기타중소운전자금대출	500,000,000원	2019. 8. 9.

다.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B은 2019. 2. 11. 그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공인중개사인 O을 통하여, B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3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2019.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 1) 한편, C는 2019. 7.경부터 이 사건 각 대출에 기한 이자를 연체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9. 8. 12. 원고보조참가인에게 2019. 7. 26.자 원금연체 등을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10. 22.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합계 1,445,093,584원(= 대출원금 1,427,500,000원+이자 17,593,58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2)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9. 3.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카단 103230호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으면서, 2019. 9. 11. 그에 관한 대지급금으로 892,510원을 지출하였고, 위 대위변제일인 2019. 10. 22.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발생한 추가보증료는 합계 4,813,280원(=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 912,960원 +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 2,280,320원+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 1,620,000원)이었다.

마. B에 대한 파산선고 및 소송절차의 수계

-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11.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 3. 23. 제1심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14.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 2) B은 2021. 6. 23. 수원지방법원 2020하단12251, 2020하면12251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B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3) 원고는 2021. 7. 29. 이 법원에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고, 2021. 8. 20.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에서 정한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위 부인권 행사의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2021.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2021. 8.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인권의 성립 여부

가. 부인의 대상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를 포함하므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부인권 성립의 전제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은 2019. 10. 22.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합계 1,445,093,584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과 4,813,280원의 추가보증료채권을 취득하였고, 위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결정을 받으면서 2019. 9. 11.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 892,510원의 상환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B에 대하여 위 구상금 등 합계 1,450,799,374원(=1,445,093,584원 + 4,813,280원 + 892,51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3) 나아가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비록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9. 2. 11.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점, ② C는 2019. 7.경부터 이 사건 각 대출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였고, 2019. 7. 26.자로 원금연체 등의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으며, 그 잔여 대출원금이 1,427,500,000원에 이르는 등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터 잡아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③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 이후 약 3개월 후인 2019. 10. 22. 원고보조참가인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실제로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 발생한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은 위 부인권 성립을 위한 전제로서 사해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206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와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법원의 G은행 여신관리센터장, G은행 반월산업단지 지점장, G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P 경인지사장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2. 11. 기준으로 B은 ① 2,341,971원 상당의 예금(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계약금 30,000,000원은 2019. 2. 11.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곧바로 인출되었다), 593,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2020. 11. 20. 기준 시가이나, 부동산 시세의 추이 등에 비추어 이를 가액으로 산정하더라도 피고에게 불이익하지 않다)을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원금 186,047,915원 및 124,387,448원, 신용대출금 원금 68,000,000원의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신용대출금 68,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24.경부터 연체가 발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③ B이 2021. 6. 23. 수원지방법원 2020하단12251, 2020하면12251호로 파산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① 이 사건 부동산은 B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그 적극재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등은 B의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인출된 후 그 사용용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한 점, ③ B은 위 파산선고 절차에서 채권자 3명, 총 채권금액 2,583,960,000원 상당액을 채무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위 연대보증채무 등에 기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거나 그

부족을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서 원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4.경부터 금융위원회가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을 타파하기로 하고, 기존의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2019. 8.경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종료하면 원고보조참가인도 더 이상 B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이후까지 기다리지 않고 아들인 피고 가족의 이사를 위하여 2019. 2. 11.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B의 사해의사가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내용과 앞서 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금융위원회의 조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B의 연대보증행위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책임 면제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보증사고는 2019. 7. 26.경 발생하여 2019. 8. 12.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미 통지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해의사의 추정을 복멸시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기 위해 B으로부터 대출을 안고 사는 방식으로 이를 시세대로 정상적으로 매수한 것이고, B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여 B의 채무초과 상태 내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과 피고는 부자지간으로서 피고는 B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 가족의 이사 및 거주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피고는 2015. 2. 3.경에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한 바 있다), ② 피고는 B에게 2019. 2. 11. 30,000,000원, 2019. 2. 27. 99,674,456원 합계 129,674,456원만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나 위 각 돈은 B에게 입금된 즉시 그대로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3.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부인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 또한 인정된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나 부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참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나.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의 범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9. 2. 11.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186,047,915원 및 124,387,448원 합계 310,435,363원(=186,047,915원+124,387,448원)인 사실, 원고의 부인권 행사의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2021. 8.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2021. 8.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P 경인지사장에 대한 시가감정축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피담보채무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주식회사 G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9. 2. 27. 모두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2021. 8. 21. 기준 시가가 95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위 감정축탁 결과에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부인권 행사의 효력은 부인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1. 8. 20. 발생하였고, 그 무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950,000,000원에서 위 각 피담보채무액 합계 310,435,363원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위 가액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639,564,637원(= 950,000,000원 - 310,435,363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따른 가액배상의무가 사해행위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과 달리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부인의 소는 부인권을 행사한 때 효력이 발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으므로, 그 부인권 행사 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위 가액 산정시기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보더라도 위 가액 산정시점인 2021. 8. 21.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1. 20.과 시간상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부동산 시세의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위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021. 8. 21.경 시가인 950,000,000원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그 가액 산정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위 639,564,6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를 하고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인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판사박순영

판사이재환

판사임솔

별지